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30.(목) 11:00

제23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안전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166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1. 12. 22 (수정안 12. 29.)
- 라. 회부일자 : 2021. 12. 23 (수정안 12. 29.)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액					제3회추경(안) (명시이월)
		소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제2회추경	간주처리	
계	707,717,384	707,717,384	545,733,305	12,416,344	51,465,113	98,102,622	- <35,762,867>
일반회계	695,665,460	695,665,460	532,501,288	12,416,344	54,124,013	96,623,815	- <35,262,867>
특별회계	12,051,924	12,051,924	13,232,017	-	-2,658,900	1,478,807	-
의료급여	655,976	655,976	503,592	-	76,544	75,840	-
주민소득	642,392	642,392	294,400	-	347,992	-	-
주 차 장	10,753,556	10,753,556	12,434,025	-	-3,083,436	1,402,967	- <500,000>

※ 세출규모 변동은 없음

4. 도시안전국 명시이월 사업내역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2021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교부세(금)	국시비 보조금	구비
합계 : 5개 부서 / 10건		3,407,317	3,066,133	1,967,290	784,238	314,605
주택과 (1건/80,000천원)	주거환경사업 지원	89,456	80,000			80,000
안전도시과 (1건/116,729천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269,000	116,729	44,492	72,237	
도시계획과 (1건/315,220천원)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761,800	315,220		157,610	157,610
건축과 (1건/20,678천원)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32,061	20,678		20,678	
공원녹지과 (6건/2,533,506천원)	새재미 어린이공원 재조성	920,000	80,558	80,558		
	도시공원·놀이터 내 CCTV 설치	300,000	300,000	300,000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400,000	400,000	400,000		
	빈집활용 도시정원 조성	135,000	121,474		94,479	26,995
	호암산자락 생활체육공원 조성	500,000	489,234		439,234	50,000
	개발제한구역 42관리초소 리모델링(신축)	1,200,000	1,142,240	1,142,240		

5. 검토의견

- 도시안전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5개 부서 10건 30억 6,613만 3천원으로
- 주택과 : 1건 80,000천원

(단위 : 천원)

연 번	사 업 명	2021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사 유)
			계	특 별 교부세(금)	보조금	구 비	
합 계 (1건)		89,456	80,000	0	0	80,000	
1	주거환경사업 지원	89,456	80,000			80,000	[연도 내 집행 불가] 현재 적정성 검토 신청 시, 재건축 불가 판정이 될 우려 가 있어 가급적 안전진단 법 령 변경동향 파악 및 의뢰 시 기 조정 필요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안전진 단 기준 완화 관련 법 개정 요구 중)

- 주거환경사업 지원 1건 8,000만원은 남서울 럭키아파트의 안전진단
관련하여 법 개정 요구에 따른 연도 내 지출불가하여 이월

- 안전도시과 : 1건 116,729천원

(단위 : 천원)

연 번	사 업 명	2021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사 유)
			계	특 별 교부세(금)	보조금	구 비	
합 계 (1건)		269,000	116,729	72,237	0	0	
1	임시선별 검사소 운영	269,000	116,729	72,237			[연도 내 집행 불가] '21. 12. 28.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 하여 이월하여 운영코자 함

- 임시선별 검사소 운영 1건 1억 1,672만원은 12월말 교부되어 연도 내 지출
불가하여 이월

- 도시계획과 : 1건 315,220천원

(단위 : 천원)

연 번	사 업 명	2021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사유)
			계	특 별 교부세(금)	보조금	구 비	
합 계 (1건)		761,800	315,220	0	157,610	157,610	
1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761,800	315,220		157,610	157,610	[준공기한 미도래] - '22. 1. : 교통영향평가 및 전 략환경영향평가 계약 금액의 70% 선금 지급 예정

-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3억 1,522만원이 준공기한 미도래하여 명시이월되며

- 건축과 : 1건 20,678천원

(단위 : 천원)

연 번	사 업 명	2021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사유)
			계	특 별 교부세(금)	보조금	구 비	
합 계 (1건)		32,061	20,678	0	20,678	0	
1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32,061	20,678		20,678		[집행시기 미도래] '21. 11. 시비 교부금이 교부 결정 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1건 2,067만 8천원이 시비 보조금의 11월 결정으로 연도 내 집행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

- 공원녹지과 : 6건 2,533,506천원

(단위 : 천원)

연 번	사 업 명	2021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사유)
			계	특 별 교부세(금)	보조금	구 비	
합 계 (6건)		3,455,000	2,533,506	1,922,798	533,713	76,995	
1	새재미 어린이공원 재조성	920,000	80,558	80,558			[연도 내 집행 불가] 부지 내에서 지하수가 다량 유출되어 지반보강 공사 선행이 불가피하여 후속 조경 공사도 순연
2	도시공원·놀이 터 내 CCTV 설치	300,000	300,000	300,000			[집행시기 미도래] '21. 7월 특별교부세 교부사업 으로 주민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필요
3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400,000	400,000	400,000			[연도 내 집행 불가] 특별조정교부금 11.26 교부
4	빈집활용 도시정원 조성	135,000	121,474		94,479	26,995	[집행시기 미도래] - '21. 9. : 보조금 105,000천원 교부완료 - '22. 1. : 보조금 95,000천원 교부예정
5	호암산자락 생활체육공원 조성	500,000	489,234		439,234	50,000	[연도 내 집행 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이 행 완료 후 토지보상 및 실 시설계, 공사 추진 가능
6	개발제한구역 42관리초소 리모델링(신축)	1,200,000	1,142,240	1,142,240			[집행시기 미도래] '21. 7. 특별교부금이 교부 결정 되어 설계 진행중이나, 공사의 연도 내 집행 불가

· 새재미 어린이공원 재조성 등 6건 25억 3,350만 6천원이 명시이월되며
주민 협의 행정 절차 이행, 특별교부금의 하반기 지급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함.

○ 도시안전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전문개정 2011.8.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